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배포일시	2020. 11. 2.(월) / 총 3매(본문 3)	
		담당자	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안일찬, 주무관 곽태훈 • ☎ (044) 201-3573, 4593, 3586	
보도일시		2020년 11월 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3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현장안전 강화·품질 우수 업체에는 별점 경감·혜택 부여

-부실공사 별점산정 방식을 평균→합산으로 변경하여 법인의 책임 강화

□ 건설공사 부실별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△별점산정방식 변경, △부실별점 측정기준 명확화, △안전·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

○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별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(안 별표8 제5호 가~다목)

○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별점이 부과되도록 ‘미흡한 경우’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,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~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, 2,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.

②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(안 별표8 제4호)

-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,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.
- 이에 따라, 건설현장의 공사비,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·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으며,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.

③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(안 제87조의3)

-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,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하여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.
- 또한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,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.

④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(안 별표8 제5호 사목)

-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·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.

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(안 별표8 제5호 바목)

-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·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.

- 우선,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별점을 20% 경감하고, 2반기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%, 3반기 연속인 경우 49%,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%까지 별점을 경감한다.
 - 또한,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 받은 현장 수 대비 별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(관리우수 비율)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% 이상이면 1점, 90%이상 95% 미만이면 0.5점, 80%이상 90%미만이면 0.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별점을 경감한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·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,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45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